

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68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07. 07.

발의의원 : 김재우, 권기훈,
김원규, 김지만,
류종우, 박소영,
이재숙, 이태순,
전경원, 하중환
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가. 한국메세나협회의 2021년 기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중 문화예술분야 후원은 5% 정도로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.
- 나. 문화예술분야 저변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.
- 다. 따라서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을 통하여 ‘문화예술의 도시’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,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,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협력체계의 구축,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「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문화예술후원 단체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2. 문화예술후원 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3.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, 전문예술법인,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
4.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·지원)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,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·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8조(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지역문화 진흥 조례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
2.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(財源)에 관한 사항
4.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
5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6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